

건축설계 저작권 재고(再考)

Reconsideration of the Architectural Design Copyright

尹泰燮 /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Yoon, Choon - Sup

FEATURE

무한한 창작의 범주는 건축을 기술적 측면과 함께 예술로 인정받게 하는 근본이유이며, 특히 건축설계작품의 독창성은 궁극적으로 건축가의 권리와 재산으로 간주되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국가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법협약에는 멀리 1886년 조인된 Berne Convention과 1952년 UNESCO에 의해 주도된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있으며 한국은 1987년 UCC에 가입하였다. 국내의 저작권법은 1957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그후 1987년에 1차 개정된바 있다.

국내 저작권법의 건축관련부분을 살펴보면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며, 복제란 하나의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를 사용하여 다시 이를 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인 건축가의 승인없는 불법복제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설계작품의 원상태를 유지하는 권리, 즉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을 가진다. 그러나 일단 건축된 건물의 증축, 개축, 수선과 같은 변형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저작권은 설계도서의 불법복사나 게재에도 법적효력을 가지나, 설계도서가 아닌 건물자체나 전시모형은 누구나 허락없이 촬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서적, TV방송 등에 게재, 방영 할 수 있다. 다만 신문이나 건축잡지, 작품집 같은 출판물에 실린 건물사진의 복사나 재촬영은 조금 복잡하다. 가령, 잡지에 실린 건물사진의 복사나 재촬영은 건축가가 아니라 사진촬영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진도 이차적(二次的)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잡지에 실린 도면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기사의 저자 및 도면의 원저작권자인 건축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가의 설계계약서식에는 건축사의

저작권소유관계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취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사의 독창적 작업의 도용(盜用)이나 불법제사용을 막고자 함이다. 국내의 설계계약서식에도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귀속(歸屬)되며 건축주는 본 설계도서로서 다른 위치에 모방(模倣)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저작권의 귀속관계가 명시되어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이와 같은 설계계약서식상의 저작권 귀속과 모방건축금지조항에 대하여 재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저작권의 건축가 소유. 여기에는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제삼자에게 양도되거나 위탁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축가와 건축주 양자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엔 예외가 인정되고,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원건축가가 다른 건축가에게 금전거래에 의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양도나 위탁은 공동저작자 전원합의에 의한다. 즉 공동설계작품일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지분을 공유하게 되고, 만약 그 기여도가 구분될 수 없을 때는 균등한 지분을 공유하게 되나, 이 모든 경우 공유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저작권의 양도나 위탁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용관계에서의 설계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아니라 고용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관계는 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계약관계이므로 이점과 무관하다.

또 하나, 현재의 저작권 귀속에 함축된 의미는 건축가 자신이 과거 한 건축주를 위해 납품했던 설계도면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 전부를 다른 건축주를 위해 무제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품을 일만소비재와 같이 상품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혹자는 그러한 복제설계를 할 건축가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겠지만 후에 소개될 몇가지 사례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 짐에 따라 예전에는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각종 이권관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권같은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시비의 급증이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건축설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왕왕 작품에 대한 표절시비가 생겨나곤 한다. 더욱이 정보매체의 발달과 정보유통의 초현대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손쉽고 빠르게 국내는 물론 해외의 설계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어 표절시비는 더욱 늘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피할 수 없는 시장개방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처지를 감안할 때 건축설계저작권에 관련된, 그리고 장차 관련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둘째, 모방건축의 금지, 여기서는 모방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도작(盜作)이 아닌 이상 작품의 모방은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법에서는 그 보호영역을 추상적인 것 보다는 실제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남의 아이디어나 개념의 사용(도용?)까지 저작권침해로 확대해석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내것과 비슷하다."는 정도로는 저작권침해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에 따라 그 해석은 융통성을 갖겠지만 일단 한 설계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도용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완벽한 도용, 즉 도작은 명백한 저작권침해이나 실제로 도용의 정도를 자로 재듯 명확히 측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실제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연의 일치로 동일시점에 두개의 같은 작품이 나왔다면 이 경우 두사람 모두 저작권을 보호받게 된다.

그러면 저작권소유와 모방건축에 관계된 극적인 사례 몇가지를 영국의 건축지 Architects' Journal ('85. 6. 5)에서 발췌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첫번째 사례. 법적소송으로까지는 비화되지 못하였으나 매우 애매한 경우로서 뉴욕 Long Island의 주말주택설계에 관계된 일화이다. 1981년 당시 Progressive Architecture로부터 시상될 만큼 우수한 주택설계안이었으나 불행히도 건축주가 건축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New York Times지에 설계를 설계원가인 2만5천불에 판다고 광고를 한 사례이다. 물론 보편적인 계약시 설계안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귀속되나 이 경우 계약 당시 건축주측 변호사의 권유로 설계완료시 그 설계는 건축주의 재산으로 한다는 약정을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결국 건축사는 법적권리주장을 못하게 되었다.

둘째, Florida를 거점으로 활약하는

Arquitectonica설계사무소가 겪은 사례. 1978년에 5만불을 받고 고층 콘도미니엄(우리의 경우 아파트)을 설계했으나 건축주가 건축을 포기하고 건축부지를 캐나다계 한 회사에 매도하였다. 그후 그 회사는 공교롭게도 같은 설계사무소인 Arquitectonica에 의뢰하여 동일부지에 Atlantis란 건물을 건립하였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전건축주에게 납품한 그 설계안과 매우 흡사한데서 일어났다. 이에 전건축주는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설계비 반환 및 자신이 매수한 예술작품에 대한 불법매매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셋째, 1984년 뉴욕에서 일어난 저작권관련 소송사례. 1983년에 준공된 뉴욕 3번가 Trump Plaza의 이웃 대지소유자는 Trump Plaza를 설계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우연이건 의도적이건 매우 흡사한 설계안이 작성되었다. 이에 Trump Plaza의 소유인은 자신건물의 독창성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건축중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결국 판사는 법적심판보다는 건축주와 건축사에게 신축건물외관의 유사성을 많이 줄이도록 증재한 바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 짐에 따라 예전에는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각종 이권관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권같은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시비의 급증이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건축설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왕왕 작품에 대한 표절시비가 생겨나곤 한다. 더욱이 정보매체의 발달과 정보유통의 초현대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손쉽고 빠르게 국내는 물론 해외의 설계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어 표절시비는 더욱 늘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피할 수 없는 시장개방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처지를 감안할 때 건축설계저작권에 관련된, 그리고 장차 관련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